



재외동포청-식약처, 화장품 증명서 관련 아포스티유·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

-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증명서 6종...앞으로 추가 공증 불필요
- 재외동포청-식약처 적극 협력...업계 애로사항 해소, 화장품 수출 지원

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과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증명서*(6종, 영문·중문 등) 원본에 대하여 추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,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.

* 베트남·중국·인도네시아·UAE 등으로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①제조판매증명서, ②제조 증명서, ③제조업자증명서, ④책임판매업자증명서, ⑤기타주소변경증명서, ⑥물종증명용 원산지증명서

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(연간 1만 8,000건)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,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.

재외동포청과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·협력하여, 정부기관에서 위탁받아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고 있는 증명서 6종에 대해 추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,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.

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*로, 관련 법령**에 따른 공문서(정부기관 발급 문서, 공증문서 등)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.

* 아포스티유(Apostille)는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 대상, 본부영사확인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 대상

** 「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

재외동포청과 식약처는 아포스티유,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공증비용도 절감(연간 약 18억원)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(www.oka.go.kr)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(02-6747-0404)로 문의하면 된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	책임자	팀장	김수연	02-6399-7130
		담당자	주무관	박수빈	02-6399-7102
담당 부서	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고지훈	043-719-3401
		담당자	사무관	김지연	043-719-3404

